

생성형 AI 로 만든 ‘지브리 스타일’ 이미지, 저작권 침해일까?

안녕하세요. 이현섭 변호사입니다.

최근 SNS 에서 생성형 AI 를 활용해 스튜디오 지브리의 독특한 화풍을 모방한 그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른바 ‘지브리 스타일’은 캐릭터의 큰 눈과 부드러운 윤곽선, 자연과 환상이 어우러진 배경 묘사 등 특유의 그림체로 쉽게 식별되어 전 세계 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.

특히 챗 GPT 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누구나 쉽게 지브리풍의 그림을 만들어 공유하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.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7 억 장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,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, 이런 ‘지브리 스타일’의 인기와 더불어 AI 가 생성하는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**생성형 AI 와 저작권**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논란

‘지브리 스타일’을 비롯하여 생성형 AI 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현상은 개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재미로 시작됐지만,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되며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
대표적인 사례로, 2024 년 맥도날드 멕시코 지사는 자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챗 GPT 를 이용해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진 홍보 이미지를 올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맥도날드가 스튜디오 지브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술을 도용하였다면서 ‘명백한 저작권 침해’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.

2025 년 한국법상 저작권 법률관계

그렇다면 현재 한국법상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

저작권법상 스타일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스타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 여부로 판단됩니다.

구체적으로, 대법원은 “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.”는 점을 침해의 요건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(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 다 268061 판결). 따라서 단순히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,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.

그러나 AI 로 생성된 이미지가 지브리의 특정 캐릭터나 장면을 명확히 복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지브리의 ‘토토로’ 캐릭터를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AI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.

AI 는 그 자체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. 다시 말해, AI 가 특정 스타일을 생성하려면 기존 작품 데이터를 ‘학습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 기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지브리의 원본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복제되고 사용됐다면,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Getty Images 는 Stability AI 등을 상대로 무단으로 자사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

■ 생성형 AI 와 관련된 저작권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?

이렇게 법규정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,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가장 바람직한 것은 **IP 보유자와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저작물 데이터를 학습하고, 그에 따라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**일 것입니다.

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(1)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통해 유저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미지 등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, (2)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청(질문)에 대하여는 AI 결과물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필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.

제 글이 생성형 AI 또는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에 있는 많은 창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5 SEUM Law.

이현섭 변호사

Partner

hyunsub.lee@seumlaw.com